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7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영진 · 한민수 · 차지호
이연희 · 안태준 · 박민규
노종면 · 윤후덕 · 박상혁
김성희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양관리청이 각각 수거·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오염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행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또는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조사 및 수거·정화 활동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민관협력 활동
5. 그 밖에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임받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3(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1. 항행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u> <u>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수거</u> <u>3.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또는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조사 및 수거·정화 활동</u> <u>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민관협력 활동</u> <u>5. 그 밖에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u> <u>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u>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 -----<u>해양수산부장관</u>으로부터 <u>위임받은</u>----- ----- ----- ----- -----.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u>----- -----.
---	---